

재일 한국인 문제의 기원

文 京 洙*

목 차

I. 들어가면서

1. 식민지 지배와 노동력 이동
2. 大阪-濟州島 - 「君が代丸」가 묶는 두 사회
3. 재일 한국인의 「外國人」化 - 해방 그리고 생활세계의 분단
4. 「外國人」化의 과정

II. 마치면서

I. 들어가면서

관동대지진 때(1923년 9월), 한국인의 학살 배경을 연구한 M·A·와이너는, 그 저서의 제목을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인 커뮤니티의 기원』이라 붙이고 있다. 이 타이틀에 나타난 것처럼 그 책은 1910년 한일합방에서 관동대지진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인이 일본으로 도항하는 과정과 그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을 검토한 것이고, 오늘날도 더더욱 생생하게 펼쳐지는, 일본인의 한국인관에 대한 표준 타입을 탐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와이너 자신도 인정하듯 제1차세계대전부터 20년대 전반에 걸친 한국인 「이민 최초의 물결」은 「정주자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還流 移民」이었다 [Weiner, 1989:202]. 이 시기에, 탄광이나 토목현장의 합숙소에 처박혀 혹사당한 그들의 모습이 일본 사회 속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그들은 적어도 이 때까지는 일본에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했다. 나중에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그들이 명확한 사회적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의 정주자로서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1930년대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런 입장에서, 재일 한국인 사회의 형성 과정을, A·폴테스 및 T·보스웰과 D·조르자니 등의 노동력 이동에 관한 논의를 계속 참조하면서 조사하였다. 조사는

* 日本 立命館大學 教授, '99 濟州大學校 동아시아 연구소 객원연구원

재일 한국인 최대의 집단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大阪과, 大阪으로 가장 많이 이주한 제주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나타난 재일 한국인 사회의 특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이, 제목을 재일 한국인(사회)의 기원이라 하지 않고 재일 한국인 문제의 기원이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일 한국인 문제의 기원으로 논의된 것은, 「강제연행」으로 알려진 전시 동원에 관한 문제일 지 모른다. 예를들면 일본 식민지 연구로 유명한 淺田喬二씨는 그의 편저속에서 「강제 연행」의 가혹함을 지적하면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680,000명(1990년 말)이다. 이 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강제 연행된 사람들의 2세 혹은 3세이다」고 서술하고 있다[淺田편, 1994:28].

「강제 연행」이란 中日戰爭 개시 이후, 「募集」(1939~1941년)으로 시작되어 「官斡旋」(1942~43년), 「징용」(1944~45년)과, 형세가 악화됨에 따라 그 난폭성이 심해진 강제 혹은 반 강제적인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전시 동원을 의미하고, 厚生省의 자료에서도 그 피해자는 667,000명에 달한다. 그 가혹한 노동 환경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그 기억은 지금도 일본과 남북한 사이에 풀기 어려운 쪼꺼기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재일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는 1930년대에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재일 한국인 문제의 기원으로서의 「강제연행」 설은 선의라고는 하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잘못된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제의 초점은 재일 한국인이 이미 1930년대에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률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신헌법의 인권보장 규정의 사각으로 내 몬, 전후 일본 정부의 정책과의 齟齬에 있다. 그리고 이 齟齬는 냉전의 종식이나 국제화가, 당시 그런 정책의 전제가 되었던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념이 크게 계속 흔들린 오늘날 일본의 컨텍스트에서, 보다 더 중대한 사실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실태와 정책과의 괴리를, 전후 재일 한국인 문제의 기원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되돌아 본다.

1. 식민지 지배와 노동력 이동

한국인이 일본 재류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은, 1876년 불평등조약(日朝修好條規)의 체결에 의한 것이다. 물론 1910년 한일합방 이전, 재일 한국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통계나 자료는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수를 확정짓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의 형성은 적어도 그 前史로서는 한일관계가 「근대적」으로 재편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근대 일본이 한국인관의 표준 타입을 찾아내는데 놓칠 수 없는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포르테스는, 전통 사회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무역 관계를 통하여 접촉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노동력 이동을 국제노동력 이동의 제 2단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Portes, 1981:31-2]. 그런 노동력 이동론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 「前史」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런데 어떠한 대량 혹은 자발적인 이민의 흐름을 촉발시키는 것은, 전통 사회가 자본주의 세계의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이고, 포르테스가 가장 증시하는 것도 이 노동력 이동의 제 3단계인 것이다. 재일 한국인의 「이민 최후의 물결」도 역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토지

조사 사업」(1910~18년)에 따른 한국 사회의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한 것이었다. 우선 이 「토지 조사 사업」은 구미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도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개혁이라 불리우고 이것에 따라 토지와와의 관습적인 결합이 끊긴 농민들의 다수는, 한쪽에서는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변방의 개척민이나 화전민으로 유랑 생활을 할 수 없이 하였다.

1910년대에 토지를 잃은 한국인의 주요 유출처는 중국의 동북 지역이었다. 표 1에서 보듯 제1차대전의 軍需 景氣에 들끓은 17년이후, 일본으로 도향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 일본으로의 인구 유출은 전통 사회가 자본주의 세계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소위 구조적 강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노동력 이동에 얽힌 잘 알려진 사실을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일합방을 전후의 일본은, 면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명을 겨우 이룬 시기이고 생산 수단이 되는 제품의 거의 모든 부분을, 19세기에 설립하는 국제 분업 체제에 깊이 의존할 입장에 있었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일본 자체가 아직 반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표 5-1> 재일한국인 인구

(단위 : 명)

年度	國勢調査	內務省調査	濟州島 出身
1911		2,527	
1915		3,917	
1920	40,755	30,189	
1921		38,651	
1922		59,722	
1923		80,415	10,381
1924		118,151	19,552
1925		129,870	25,782
1926		143,798	28,144
1927		165,286	30,505
1928		238,102	32,564
1929		275,206	35,322
1930	419,009	298,091	31,786
1931		311,247	33,023
1932		390,543	36,125
1933		456,217	47,271
1934		537,696	50,045
1935		625,678	48,368
1936		690,501	46,463
1937		735,689	
1938		799,878	
1939		961,591	
1940	1,241,315	1,190,444	
1941		1,469,230	
1942		1,625,054	
1943		1,882,456	
1944		1,936,843	
1945		980,635	
1946			
1947	508,905	598,507	
1948		601,772	
1949		597,501	
1950	464,277	544,907	

出所 : 金 英 達 [1996] ; 濟州島出身者는 杉原達[1996b]

제1차대전에 의한 유럽 열강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후퇴는, 면제품을 주체로 하는 일본의 경

공업 제품의 수요를 눈부시게 증가시켰다. 그와 동시에 일본이 믿고 있던 열강 제국으로 부터 자본재 수입의 문을 닫고, 일본에 대하여 기계 생산의 길로 가게 하였다. 즉 제1차세계대전과 함께 국제 분업 체제의 균열은, 자본재 수입→경공업 제품의 수출이라는 형태로 세계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던 일본의 반 주변적인 지위로부터의 탈피를 강요당한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부터 전후의 反動不況(1920년)에 이르기까지 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의 중화학공업이 이만큼 발전되고, 그것은 일본이 대도시와 그 주위에, 발전하는 공업지대 쪽으로 거대한 인구의 이동을 초래하였다. 재일 한국인의 초기 형성이 그런 공업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표 5-1>에 나타난 인구 동향에 잘 나타나 있다. 와이너가 묘사한 것은, 이 제1차산업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 변동기에 일본에 생계를 목적으로 건너 온 한국인들의 생활이었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부흥은 사회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한다. 팽창하는 도시 인구에게 있어서는 식료품 공급의 부족과 쌀 가격의 폭등으로 극을 달리는 1918년의 「쌀 소동」도 하나의 귀결이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도시의 문화나 생활 양식을 달리하는, 생계가 목적인 한국 농민들의 모습은, 변동기 사회에 있을 법한 스트레스 형태의 하나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쌀 농사의 적극적인 육성과 조선 경제가 쌀 생산 쪽으로 특화를 노린 「産米増殖計劃」의 추진도, 그런 불균형적인 발전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몰락과 농촌으로부터의 인구 유출이는 사태도, 그 자체로는 근대 식민지 경영에는 익숙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규모와 속도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다른 예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中村, 1991:156]. 堀和夫의 계산에 의하면 조선에서 「産米増殖計劃」이 진행된 1920년부터 30년까지 10년동안에, 農村部(郡域)에서 유출된 인구는 77만명이고 이 중에서 40만명 가깝게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堀, 1995:117]. 재일 한국인의 인구도 이 기간에, 1920년 약 3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했다.

만약 이 「産米増殖計劃」기가 한국인이 일본으로 도항의 제2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제3기를 이루는 것이 북한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된 1930년대이다. 제1차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공업화가 그렇듯, 30년대에 한국에서 진행된 이 공업화도, 1929년 공황을 계기로 세계 시장의 해체에 대응한 일본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개와 연결되어 진행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식민지 자본주의(혹은 주변부 자본주의)의 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업화의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더욱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식민지 시대의 조선 사회의 구조 변화가 가장 드레스틱하게 진전된 시기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때 한국에서 산업별 생산액(粗生産)이 차지하는 농공간의 비율은, 1932년에 농업 63.1%, 공업 24.1%에서, 40년에 농업 38.3%, 공업 41.9%로 역전되고 광공업 부문의 노동자 수도, 같은 시기에 13만명에서 83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런 산업 구조의 드레스틱한 변화와 함께 농촌으로부터 인구 유출도 심해 지고, 堀의 계산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27만명정도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유출되고, 이 중에서 약 150만명이 일본을 필두로 해외로 향하였다[堀, 1995:117].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한반도부터의 인구 이동은, 포르테스가 국제 노동력 이동의 제 3단계로서 지적인 메카니즘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소개한데로 포르테스는, 「외부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의 시스템에 통합되는 단계를, 전자가 무역 관계

를 통하여 후자에 접촉하는 시기(제 2단계)에 이어진 제 3단계로 하고 이것을 국제 노동력 이동의 메카니즘 속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다. 우선 포르테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시스템에 통합된 때에 발생하는 전통 사회(외부사회) 내부에서의 구조적인 불균형이다. 포르테스는 대량 또는 자발적인 이민의 흐름을 촉발하는 것은, 중추국에서 단순한 취로 기회의 증대나 소득 격차의 확대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변 사회 내부에서의 근대 부문과 전통 부문과의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이고, 그것은 한국의 사례에도 타당할 것이다.[portes, 1981:32].

거기에도 식민지인 한국에서 인구 유출의 단계적인 성격을 생각할 경우, 흥미 진진한 것은 미국으로 흑인이나 중국인 등의 이민을 검토한 보스웰과 조르자니의 지적이다. 그들은 포르테스와 같이 외부사회가 자본주의 세계의 시스템에 통합된 과정에 착안하여 거기에서 생기는 노동력 이동을 첫째, 강제적 이주(coercive migration) 둘째, 환류형 이민(sojorning migration) 셋째, 임금 노동형 이민(wage migration) 등 세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강제적 이민은, 포르테스의 제 1단계에 대응하는 이민 유형이다. 후자의 두 유형은, 포르테스가 말하는 3단계에서 생기는 자발적 이민을, 외부 사회가 자본주의 세계로의 통합에 발맞추어 또 두개의 타입으로 하위 분류한 것이다[Boswell and Jorjani, 1988:171-4].

1940년대에 맹위를 떨친 전시 동원기는 논외로 하고 한국 농민의 일본 도항은, 전술한 것처럼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10년대 후반에 시작되고, 20년대의 「産米増殖計劃」 期를 거쳐 한국에서 식민지 공업화가 한창 진행된 30년대등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보스웰과 조르자니의 유형화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1910년대 부터 20년대의 이민은, 환류형 이민에 대응하고 주로 탄광이나 건축 노동에 종사하는 낱품팔이형 이민이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은 고향의 전통 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품팔러 나간 곳에서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전통 사회가, 근대적인 자본주의 부문과 계속 병존하여 광범위하게 남아 있을 지 혹은 그 해체가 아직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과도적인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30년대에 일본에 유입하는 한국인은 <표 5-2>에서 보듯이 하층 직공등 중소 영세라 할 지라도 제조업 부문에 임금 노동자로서 정직을 얻는 경우가 많아 진다. 보스웰과 조르자니에 의하면 식민지 하에서 상품 경제가 철저하게 진행된 단계에서 태어나는 이 임금 노동자 타입의 이민은, 돌아갈 집이 없는 정주형 이민이기도 하고 이 점은 1930년대 한국인의 도항 형태(단신으로 도항하여 舉家離村에 의한 도항)나 일본에서의 생활 상황(세대를 갖는 일이 증가)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Boswell and Jorjani, 1988:173]. 즉 1930년대에는 일본에 도항하는 한국인이 수적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과 생활 형태라는 측면에서도, 전후 제일 한국인 형성에 관련된 것과 같은 증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표 5-2〉 內地在留韓國人職業別調

(단위 : 명)

	1934년 전국	1940년 전국	1934년 大阪	1940년 大阪
有識者	29,871	8,489	256	1,002
商業	26,749	389	6,650	15,441
農業	2,856	7,711	44	324
漁業	266	389	4	42
【勞働者】				
礦業	9,191	78,028	0	0
纖維工業				
職工(小計)	25,038	28,280	10,116	10,865
紡績業	4,825	3,658	25.90	639
織物業	7,747	6,867	27.69	2,170
製絲業	2,194	2,138	388	833
染色加工業	4,002	5,765	2,203	2,524
그 외	6,270	9,852	2,166	4,699
雜役	6,815	14,043	1,035	6,617
金屬機械工業				
職工(小計)	12,429	35,475	9,700	20,289
雜役	6,912	22,165	4,382	12,074
化學工業				
職工(小計)	20,526	15,728	15,221	15,667
고무工業	5,415	4,250	4,381	2,680
유리工業	6,873	8,382	5,600	6,087
그 외	8,238	3,096	5,240	6,900
雜役(小計)	7,927	22,523	4,346	15,742
고무工業	1,702	2,221	1,534	1,507
유리工業	2,145	6,118	1,509	3,895
그 외	4,080	14,184	1,303	10,340
電氣工業				
職工	859	2,060	677	1,308
雜役	521	1,965	332	1,399
出版工業				
職工	1,143	1,430	712	692
雜役	508	1,007	329	650
食料品製造業				
職工	1,226	2,548	480	1,071
雜役	919	2,676	340	1,159
土木建築業	85,451	144,512	13,401	21,002
土工夫	71,880	125,267	10,244	15,764
그 외	13,571	19,245	3,157	5,238
通信交通運輸業	5,855	13,857	1,977	4,262
一般使用人	25,100	28,026	7,633	7,148
그 외 勞働者	39,528	52,830	11,722	9,415
接客業者	5,055	4,905	2,164	734
그 외 有業者	10,740	25,638	5,359	11,567
失業者		510		402
學生生徒	6,093	20,793	612	3,054
初等兒童	32,243	12,9513	9,381	37,134
在監者	2,365	1,338	542	201
無職	191,359	425,437	58,611	107,889
합 계	1,446,1237	26,662,064	4,685,592	7,362,037

出所 : 朴[1975/76] 付表를 근거로 작성

이리하여 보스웰과 조르자니의 이민의 유형론은 확실히 재일 한국인의 형성에 관한 메카니즘 또는 그 성격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재일 한국인의 형성은, 그러한 유형론으로 만든 풀 수 없는 역사 과정의 소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전쟁 전·후를 통하여 재일 한국인의 최대 집단 거주 도시가 된 大阪과 濟州島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하여 개관해 보고자 한다.

2. 大阪-濟州島 — 「君が代丸」가 묶는 두 사회

1) 多에스니시티 도시·대판

大阪에 한국인의 도향이 급증한 것은, 1923년 2월 大阪-濟州島항로 개설 이후의 일이다. 1922년 겨우 1만명을 넘었을 정도였던 在阪韓國人の 수는 10년후인 32년에는 벌써 10만명대에 달하고 35년에는 20만명, 40년에는 3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 재일 한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34년의 33%를 피크로 30%전후<표 5-3>와 10%전후로 추정되는 2위인 東京을 상당한 차로 별려놓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을 끌어 온 大阪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도 가장ダイナミック한 발전을 이룬 도시의 하나였다. 大正期の 大阪슬랩의 생활 과정을 연구한 杉原薫와 玉井金五는 이 때의 大阪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大正14년(1925년)경 大阪市는 211만명의 인구를 갖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大阪市統計書』의 집계로는 세계 제6위, 東京市는 200만명으로 세계 제7위—이고 市중앙부의 전통적인 상업, 금융의 중심지인 동시에 그 주변부 특히 淀川에서 大阪에 걸친 일대에 면공업, 기계 공업 등 공장지대를 갖는 아시아 최대의 상공업 도시가 되어 있었다[杉原·玉井編, 1996:9~10].

확실히 제1차세계대전 후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에 大阪이 차지한 지위는 아주 크다. <표 5-4a>에서 나타나듯이 1920년대에는 관동대지진에 의하여 오히려 인구가 정체한 東京市(1920년:217만명→1930년:207만명)에 비하여 같은 시기에 125만명에서 245만명으로 거의 갑절이나 증가하고 생산액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1930년에 東京의 8억1천8백만엔인데 비하여 大阪이 9억9천6백만엔). 그런데 실제로는 1920년대의 이러한 大阪이 東京에 대한 숫자상의 우위에 있어서는 실제와의 괴리가 적지 않다. 이 숫자 높음은 1932년 시장 확장에 의하여 東京市가 300만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주변의 町村을 편입한 사실로서 해명된다. 그 편입 지역은 이전부터 「舊市内에서 넘친 인구를 수용하여 사실상 東京市の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岡崎, 1950:64]고 알려지고 역시 일본에 있어 東京의 지위는 전쟁 전에도 압도적인 우위였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표 5-3〉 大阪의 재일 한국인 인구

(단위 : 명, 괄호안은 %)

年度	大阪府	大阪市
1911	232(9.2)	
1915	398(10.0)	
1920	4,494(14.9)	
1921	7,421(19.9)	
1922	13,337(22.3)	
1923	23,635(29.5)	
1924	37,046(31.3)	
1925	31,860(24.5)	
1926	35,278(24.5)	
1927	40,960(23.9)	
1928	55,209(23.2)	35,017
1929	67,972(24.7)	55,603
1930	73,622(24.7)	77,124
1931	85,567(27.0)	69,183
1932	118,466(30.3)	94,338
1933	140,277(30.1)	111,721
1934	177,160(33.0)	134,001
1935	202,311(32.3)	154,503
1936	224,749(32.5)	170,339
1937	234,188(31.8)	175,405
1938	241,619(30.2)	181,682
1939	274,679(28.6)	206,332
1940	312,269(26.2)	227,867
1941	400,656(27.3)	305,806
1942	412,748(25.4)	317,734
1943	395,380(21.0)	
1944	311,480(19.4)	

出所 : 『大阪市統計書』 각 연도판을 모아서 작성
 (1930년 大阪市の 수치는 『國勢調査』에 의함)

〈표 5-4a〉 6대 도시 인구 추이

年度	1920	1925	1930	1935
東京	2,173,201	1,995,567	2,070,913	5,875,667
大阪	1,252,983	2,114,804	2,453,573	2,989,874
京都	591,324	679,963	765,142	1,080,593
名古屋	429,997	768,558	907,404	1,082,816
神戸	608,644	704,375	787,616	912,179
横浜	422,942	515,007	620,306	704,290

<표 5-4b> 1940년도 변경 시역을 기준으로 한 6대 도시의 인구 추이

年度	1920	1925	1930	1935
東京	3,358,597(100)	4,109,525(122)	4,986,913(149)	5,895,882(176)
大阪	1,768,297(100)	2,114,804(120)	2,453,573(139)	2,989,874(169)
京都	702,338(100)	826,456(118)	952,404(136)	1,080,593(154)
名古屋	619,529(100)	783,754(127)	926,141(150)	1,110,314(179)
神戸	644,471(100)	704,375(109)	912,179(122)	912,179(138)
横浜	579,810(100)	595,115(102)	704,236(122)	796,581(138)

<표 5-4c> 6대 도시의 본토외 출신자

	본토 외 출신자		%
東京	2,070,913	25,302	1.2
大阪	2,453,573	83,839	3.4
京都	765,142	17,396	2.2
名古屋	907,404	17,858	1.9
神戸	787,616	23,373	3.0
横浜	620,306	12,318	2.0

당시 가끔 실시된 대도시의 市域의 변경을 고려하여 東京市政調査會는 國勢調査 연차에서 6대 도시의 인구를 1940년 현재로의 市域으로 다시 짜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일본에서 大阪의 대부분의 지위를 개관할 수 있게되었다. 표5-4b에 나타난 것 처럼 大阪은 1920년 부터 35년까지 15년간을 통하여 인구 규모에서 東京의 약 절반인 제2도시이고 그 인구 증가율은 70%가까울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이기는 하지만 80%가까운 증가율인 名古屋은 원래보다 東京을 밀들고 있다.

大阪에서 특징적인 것은 표5-4c에 나타난 것 처럼 역시 그 유입 인구의 구성이고 本土외의 출신자가 3.4%로, 전통적으로 국제 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춘 神戸를 웃돌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본토외 출신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1930년 당시 大阪市에는 한국인 인구(7만7천명)의 비율이 3.1%로 본토외 출신자 전체의 비율에 다가서고 있다. 게다가 이 비율은 그 후 더욱 확대되고 35년에는 5.4%, 40년에는 7.3%, 42년에는 무려 10%를 넘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더우기 이 한국인과 더불어 大阪은 근린 농촌 피차별 부락 혹은 멀리 오키나와로부터의 인구 유입의 최대의 터전이기도 하여, 실로 多에스니티도시로서 도시 형성과 발전 그 자체가 하층의 異文化集團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하층 집단은 大阪에 있어 각기 집주 지역이나 직업을 달리하는 독자적 생활 세계를 쌓아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부락 주민의 집주 지역으로서는 서부의 니시하마지가 잘 알려져 있고 그들의 다수는 제1차세계대전 후에 그 수요가 급증한 피혁 관련의 일에 종사했다. 한편 한국인의 집주 지역으로 알려진 것이 1925년 시역 확장에 의하여 大阪市에 편입된 東成區를 중심으로 한 大阪 東部の 新興工業地帶였다. 在阪韓國人の 약 삼분의 일이 여기에 집중되고 우선

東成區에서는 이미 1935년에 구 인구의 약 13%(거의 4만명)가 한국인이고 그 비율은 41년에는 약 25%(9만명 이상)에 달하였다. 전 후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의 최대 집주 지역으로 알려진 生野區(현재도 구 인구의 네명 중 한명이 한국인)는 이 東成區에서 1943년에 분구된 구역이다.

1920년대 후반 이 지역(東成區)은 도시화와 공업화를 향하여 기반 정비가 진전되고 화학 및 금속 기계 기구 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 영세공장이 점차 세워지고 공장수는 大坂市 各區 가운데 최다를 기록하게 되었다. 어쨌든 東成區의 고무 공업은 30년대 초에는 20년대 초에 이어 제2의 전성기였는데 그 발전을 지탱한 노동력이 한국인 중에서도 제주도 출신자였다. [杉原, 1996a:102].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인의 대표적인 직업 (또는 신분)은 抗夫, 인부, 학생 등을 들 수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하면 大坂에서 특징적인 것은 杉原도 설명하듯이 화학(주로 고무) 및 금속·기계부문의 중소 영세 기업에 종사하는 직공이 많았다는 것이다(표5-2). 여하튼 직공은 도로나 항만, 하천공사 등 인프라건설에 종사하는 인부 등에 비하여 정착성이 높다. 즉 大坂에 관한 한 특정 지역으로의 집주화는 정착성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식민지 하의 제주도

이미 설명하였듯이 1930년대의 제일 한국인이 정주화 경향은 大坂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 정주화와 집주화의 핵이 된 것은 어디에도 없는 大坂·東成區를 중심으로 집주 지역을 형성한 제주도 출신자였다. 제일 한국인의 출신지는 전국적으로는 거의 일관되게 경상남도 출신이 가장 많지만 大坂는 제주도 출신자의 비율이 훨씬 많다. 제주도는 일제하에서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는 단편적인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在阪韓國人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0년대에 30%에서 40%, 30년대에는 20%에서 30%로 추정되고, 숫자상으로는 경상도 출신자와 함께 在阪韓國人의 쌍벽을 이루었다.

같은 大坂에서도 제주도 출신자와 경상도 출신자는 각기 그 거주지역이나 직업, 생활 형태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大坂에서 자란 梁永厚에 의하면 경상도 출신자는 인부 등 토목 건축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大坂市内 동부 또는 거기에 인접하여 많이 분포하는 소규모 공장의 직공, 잡역과 岸和田,堺方面의 방직공장의 여공의 대다수는 제주도 출신자였다」고 쓰고 있다[梁, 1994:14]. 남자는 직공, 여자는 방직공이 이 시기의 제주도 출신자의 대표적인 직업이고 그들은 영세 공장의 임금 노동자가 되어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 적응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어쨌든 제주도는 이렇게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大坂 東部에 발전한 중소 영세 공업 지대의 노동력 수요를 담당하는 최대의 공급원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단에서 약 90킬로 일본에서 최단거리로 약 180킬로의 지점에 떠 있는, 해안선이 200킬로 정도인 화산도이고 島民들은 독자적인 전통으로 결속되고, 육지부와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언어와 습관하에서 살았다. 島는 용암층으로 덮혀 용수가 부족하고, 식민지시대를 통하여 인구의 80%에서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논 농사는 농지의 1%전후 밖에 없다. 게다가 일상적으로 강풍의 피해 및 태풍과 저기압의 빈번한 통과등 기

상 재해의 요인도 끊임없다.

이러한 자연 조건의 엄격함은, 이 섬 특유의 생활 양식과 생산 관계를 만들어 냈다. 우선 여성 노동력이 농업과 어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여성들의 해녀 생활은 목축과 함께 귀중한 수입원이 되었다. 생산 관계에서도 토지 생산력의 저하는 육지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농촌 내부의 계층 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식민지 지배가 한창인 1938년에도 자작농의 비율이 64.5%(전국 평균 18.1%)로 훨씬 높고 도민들은 촌락 단위가 극히 긴밀한 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大阪을 중심으로 한 재일 한국인의 집주 지역의 다수가 제주도 출신자에 의해 형성된 것도, 그들이 전통이나 문화·언어면에서 갖고 있던 지역적인 독자성(그것에 의하여 받는 다른 한국인으로 부터의 차별)과 함께 출신지에서 그러한 밀접한 공동체적 絆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제주도로부터 일본으로 도항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934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품팔러 나온 사람에 대하여 조사한 桒田一二是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歐州大戰의 발발과 함께 우리나라 未曾有의 공업계의 약진적 발달을 보고 内地勞働者나 직공의 현저한 부족을 알리고 결국은 노동력을 절해의 고도 제주에서 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방적공장 그외의 회사 사무원이 직공 모집을 위하여 來道하고 이 모집에 응모하여 大阪으로 도항한 섬 주민은 우량 직공으로 인정받아 수요가 급증하였다[桒田, 1976:108~9].

더우기 1919년에는 「阪神공업지대로 부터의 모집과 돈을 번 귀환자의 물질 생활의 향상과 内地 소개에 자극되어 다수의 도항자를 보았다」고 이 시기에 제주도에서 품팔러 나온 사람들의 증가를 매개로 한 몇몇 요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桒田, 1976:109]. 그러나 桒田은 낱품팔이 증가의 구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土地調査事業」에 의한 토지의 수탈은, 제주도에서 한층 심각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국유지로서 등록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전 면적의 2.8%(1017만7358정보)인데 비해 제주도에서의 비율은 어렵잡아도 10배이상이라고 한다[李, 1991:105]. 거기에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지주-소작관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경작권을 잃어버린 다수의 농민이 島内の 생산 관계에 흡수되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화하여 島外에 유출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1917년에는 제주도에 강추위가 몰아쳐 이것이 제주도에서 인구 유출을 가속시킨 것이다.

<표 5-5> 일제하의 제주도와 전 한국의 인구 증가율(1913~43)

(단위 : 명, %)

기간	全韓國 인구증가수	全韓國 인구증가율	제주도 인구증가수	제주도 인구증가율
1913~18	1,527,094	10.07	15,314	8.11
1918~23	749,896	4.49	5,688	2.78
1923~28	1,220,421	6.99	-4316	-2.06
1928~33	1,538,257	8.24	-15,669	-7.62
1933~38	1,477,264	7.31	13,711	7.22
1938~43	2,423,051	11.17	19,549	9.6

3) 날품팔이의 증가와 「君が代丸」

제주도에서 날품팔이가 극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당시 「阪濟교통기관의 혁명」으로 까지 불리웠던 大阪-濟州間 직통 항로의 개설이었다. 1923년 2월 「君が代丸」(泥崎汽船會社)의 취항으로 시작되어 다음해에는 朝鮮郵船이 같은 항로에 뛰어들고 24년 제주도에서 大阪으로 도항자는 22년 3,502명에서 1만4278명으로 네배 이상 증가하였다. 덧붙혀 같은 항로에는 가고시마郵船과 한국인 독자적으로 東亞通行組合이 뛰어들어 심한 운임 인하 경쟁을 계속한 결과, 阪濟航路는 제주도에서 일본 타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에 비해 대폭 요금이 되어 간편한 항로가 되었다.

阪濟航路가 개설된 1923년부터 33년 전후에 이르는 10년 남짓, 제주도에서 大阪으로 渡航의 증가가 얼마나 극적인 것이었던가는 <표 5-5>의 수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이다. 1923년부터 33년 사이 전 한국인의 인구가 약 15%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의 인구는 10%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大阪으로 渡航한 사람은 약 3500명(1922년)에서 3만명 가깝게 늘어나 제일 제주도인은 1만명에서 5만명으로 증가하여, 33년에는 실로 섬 인구의 사분의 일이 일본에 있게 되는 異常事態가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격렬한 노동력의 유출은 섬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막대한 경지는 삭막하게 황폐하는 상태」가 되는 한편, 노동 임금의 현저한 상승에 의하여 농가 경제는 「파멸」에 이르고 있다고 榊田씨는 보고하고 있다[榊田, 1976:116].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한 섬 당국은 그때까지 渡航獎勵策에서 渡航制限으로 바꾸고 1933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渡航희망자는 섬 인구의 약 60%(12만명)에 이르렀지만 그 중 70%가 당국의 제제에 의해 못가게 되었다[榊田, 1976:111]. 결국 1934년 이후 제주도에서 도항이 급감함(일본에서 제주도 출신자의 증가 템포가 失速)은 섬 당국의 도항 정책의 전환에 의한 것이지, 인구 유출 요인 그 자체의 제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전술한 것 처럼 1930년대는 한반도 전체로도 인구의 해외 유출이 심했지만 제주도의 인구 유출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阪濟航路에 의한 渡航便과 함께 한편으로 육지부에서는 관동대지진(1922년)이후 도항 규제 조치가 취해진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33년까지 도항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섬 인구의 과반수가 날품팔이를 희망하기까지 이르는 데에는 그 자체 외에도 제주도에 특유한 요인이 있다고 봐야만 한다. 우선 지적해야만 할 것은 사회 경제적인 상황의 차이이다. 한반도 전체에는 지주-소작관계의 전개와 함께 1930년대에는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이 있었다고 이미 서술하였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근대 섹터에서의 노동력 수요를 증대시키고 「1940년대에는 거의 실업자의 존재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 시장이 팽박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조차 말하게 되었다[堀, 1115:103].

그렇지만 그러한 공업화는 제주도에겐 거의 미치지 못했다. 1930년대에는 제주도에서도 수산물 가공을 위한 통조림 공장 등 제조업이 주로 일본인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그 규모는 39년에 공장수가 82, 노동자수가 873명 즉 섬 인구의 0.4%로, 전 한국의 십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다[高, 1991:52]. 요컨대 제주도에서는 자작농 중심의 자연 경제가 온존되면서도 상품 유통만이 이상하게 비대화한다고 하는, 생산(전통)과 유통(근대)의 극단적인 괴리가 식민지 지

배하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섬 밖으로 거대한 인구 압력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경제의 이중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君が代丸」라는 손쉬운 직행로의 존재는 세계 자본주의의 메트로폴리스인 大阪와 자급자족적인 자연 경제하에 있던 제주도 사이에 두터운 파이프가 되어 섬의 화폐 경제화를 촉진한다. 화폐경제의 자극을 받은 도민들은 농업 생산이 거의 자급자족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새 화폐 획득의 수단은 막노동 밖에 없다. 이리하여 섬의 유통부문이 생산부문의 전개와는 거의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누적되어 비대화한다.

그런데 섬 당국에 의하여 도항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은 이미 서술한 것처럼 在阪韓國人の 정주화와 집주화가 진전한 시기이다. 도항 제한은 정주화를 재촉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大阪를 중심으로 제주도 출신자의 견고한 커뮤니티가 형체화되고 그것은 전후 제일 한국인 사회의 中核을 짊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 제주도에 도항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제주도로부터 도항자는 1933년 3만명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급감하지만 그래도 35.36년은 각각 1만명 가까운 도항자가 있고 귀환자를 넣으면 2만명을 넘는다. 일본에서 同郷의 공동체 형성은 그들의 도항을 용이하게 하였다. 거기에서는 정착형 이민의 사회 존재가 환류형 이민의 지속조건이 되고 있다. 즉 비공식적인 금융 조직이나 친족 원조 또는 공제조합에 의지한 농한기의 출장노동의 큰 흐름이 이 시기에도 계속되고 그들은 제주도 사회와 일본의 제주도 공동체를 묶어 일본-한국사이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을 탄생시킨 매개체가 되었다.

결국 제주인은,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차별받는 존재이고 그것이 또 경계를 넘는 생활권 내부에서의 공동체적인 결속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시련의 시대를 견디면서 존속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에 찾아 온 평화는, 이 공동체에 전쟁에 버금가는 시련을 초래하게 된다.

3. 재일한국인의 「外國人」化 —해방 그리고 생활세계의 분단

일본의 패전은 한국인에게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을 뜻하고 1945년에는 2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재일 한국인도 대부분, 독립 국가 건설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본국으로 귀환을 한다.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는 1946년 3월에야 재일 한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는데 그 때는 벌써 140만명의 재일한국인이 귀환하였다. 그리고 송환 계획이 실시된 1946년 말까지 귀환자는 8만 3천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5만명이 계속 고국망을 밝게 되었다.

그러나 이 55만명이라는 숫자도 송환 계획의 실시를 위한 임의적인 등록 조사에 의한 것이고 말하자면 이 시기의 재일 한국인의 최소한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불과하다. 1947년 5월 「外國人 登錄令」이 공포되어 재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 때 한국인 등록자는, 1947년 부터 49년의 기간 거의 60만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거기에다 패전 직후의 혼란을 배경으로 한 번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밀입국하는 경우도 계속 생겨나고 1946년 4월 부터 12월에는 1만 5천명 이상이 불법 입국자가 강제 송환되며, 그 후 4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6천명 이상 송환되었다[金英達, 1995].

아롱튼 일본의 패전부터 일년 남짓한 사이에 약 150만명이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強制連行」 등으로 전쟁 중에 도입하여 일본 체재기간이 짧은 한국인들이고, 1930년대에 일본에서 뿌리를 내린 재일 한국인의 다수는 일본 땅에 정착하게 된다.

전쟁 직후, 재일 한국인의 귀환과 정착을 둘러싼 이같은 상황은, 大阪에서도 같은 양상을 띤다. 大阪에는 1942년 41만명을 최고로, 40년대에는 30만명에서 4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외국인 등록령」에 의한 등록자는, 1948년에서 51년에 걸쳐 10만명 전후로 추정하고 있고, 70%에서 75%가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출신자가 집주한 生野區는, 한국인의 정착율(약 40%)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높고[『大阪市 統計書』各年版], 이 지역의 한국인은 계속해서, 전후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추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런데, GHQ가 이 때쯤에 추진한 재일 한국인의 송환 계획은, 소위 일방통행식 조치이고 한 번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이, 일본으로 재도항하는 일을 확고하게 금지하였다. 강화조약의 체결까지는,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생각한 재일 한국인에게, 「外國人 登錄令」을 적용한 배경의 하나도, 한반도의 경제적인 곤란과 정세 불안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밀입국을 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제주도와 大阪을 연결하여 형성되어 있던 생활 세계를 분단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 분단은, 세계적인 규모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배경으로 점령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GHQ의 자세가 엄격함을 가증시키는 가운데, 더욱 결정적인 형태가 된다.

대체로 GHQ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기본 정책은, D·맥아더의 「初期 基本指令」(1945년 11월)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解放國民」으로서 취급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敵國人」으로서 취급해도 좋다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그 「解放國民」이라는 규정의 의의는, 실제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점령기를 통하여 재일 한국인은, GHQ에 의하여 「敵國人」, 즉 일본인 이상으로 적시되고 「역 코스」로 알려진 점령 정책의 전환이 항상 먼저 적용받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外國人 登錄令」의 기본적인 목표는, 일본에 있는 좌익 세력이 처음부터 본국의 좌익 세력과도 몰래 연결된 재일 한국인의 좌익 운동을 견제하는데 있었다. 재일 한국인 운동에 대한 GHQ와 일본 정부의 압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되고, 1948년 봄 阪神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학교의 봉쇄조치를 거쳐, 49년에는 재일조선인연맹(재일 한국인을 대표하는 최대의 대중조직으로서 45년 10월에 결성되었다)의 강제해방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GHQ의 재일 한국인 정책은, 미군의 직접 점령하에 있던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지는 좌우 대립과도 깊이 관여되고 있었다. 1948년 4월에는 제주도에서 미 군정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이것이 제주도 출신자가 많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GHQ의 태도의 경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荒, 1994:76].

「4·3사건」으로 알려진 1948년의 제주도 무장 봉기는, 그 후 진압 과정에서 3만명에서 5만명의 사망자를 낸 미증유의 유혈사태로 발전하고, 제주도의 경제와 사회는 도민들의 내면에 까지 이르는 핍폐화를 초래하였다. 그와 동시에 일본에 있던 제주도 출신자들을 고향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大阪의 한국인 사회를 미국과의 단절된, 하나의 생활세계로서 정착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의 정세 추이는, 전쟁 전에 시작된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의 정주를 움직이기 어렵게 하였다. 미국 정부도 그런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다. 1945년 7월에 미 국방성이 입안한 「한국-재일 한국인의 귀환」으로 제목을 단 문장에서는, 蘆溝橋事件이 있던 「1937년 7월 7일부터 계속 일본에 在留한 한국인」을 「상주자」로 하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일본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적 선택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金太基, 1993:131~4]. 그렇지만 나중에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그런 속주주의적인 사고가 GHQ의 점령정책에서 구체화되는 일은 결국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1952년 4월, 일본 정부는 법무부 민사국장의 通達 형식으로 구 식민지 출신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재일 한국인이 다시 일본 국적을 얻는 데에는 법무대신의 선별적인 재량에 의한 「귀화」라는 길만이 남아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일 한국인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말하자면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답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식민지 지배의 악몽을 경험한 재일 한국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4. 「外國人」化的 과정

1) 참정권의 정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인은, 좋은 싫든 일본 국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 법적 지위는 일본인과 동등하다는 뜻은 아니다.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한국인은, 국적상 같은 일본인이면서 법 제도상으로 이중적으로 차별받는 존재였다. 하나는 식민지 한국 그 자체가 「異法域」으로서 헌법이 미치지 않은, 총독에 의한 전제 정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內地籍」 「外地籍」으로 알려진 호적상 취급인데, 「異法域」이라는 것이 “지역”에 얽힌 차별이었다고 한다면, 「戶籍」은 사람이나 가문에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인이 「日本國民」이라는 의미는, 「異法域」이라고 하는, 총독 지배하에서는 통합으로 참가라는 중요한 한 것으로 공동화되어 있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內地로 도항하는 횟수의 증가, 즉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인 형성은, 같은 제국내에서 지역과 사람과의 쌍방에게 정해진 차별 체계에 놓일 우려를 낳는다. 이 우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문제였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민선 의회(중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규정에는, 호적에 관한 요건이 없고 병합에 의해서 제국 신민이 된 한국인도 내부에 이사해서 살면 다른 일본인과 같은 조건 외에, 선거권을 부인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1920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일 한국인 유권자도 대폭 확대되고 일본의 정당이나 노동단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松田利彦의 연구에 의하면 普選法에 의하여 일본인의 유권자가 인구의 약 20%가 인데 반해 재일 한국인은 거주 요건이나 그 외의 제약으로 10% 전후에 머물고 있다[松田, 1995:36~

7]. 그렇지만 그 유권자 수는 1928년 普選法에 의한 최초의 중의원선거(제 16회) 때의 11,996명에서 32년 제 18회 선거에서는 35,888명까지 확대되어 한국인의 표는 관서지방등의 도시에서는 여러 정치세력의 표발이 된다.

물론 재일 한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內鮮融和」, 즉 일본의 동화정책의 하나의 징표로서 이용되어, 1932년선거에서 당선한 재일 한국인의 단 한사람으로서 民選국회의원이 된 朴春琴도 그런 「內鮮融和」라고 하는 문맥에서의 입후보이고 또한 당선까지 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런 친일파에 대항하여 선거에 참가한 개인이나 단체도 있고 그들은 일본의 左派無產政黨의 「集票基盤의 한 중핵」이 되었다고 한다. 재일 한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정당 정치나 보통선거에 의하여 상징되는 일본의 「大正민주주의」를 띤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역사의 사실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 재일 한국인이 「外國人」化는 실로 참정권의 박탈로 시작된다.

패전후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 통치가, 독일이나 한국에 대한 직접 통치와는 달리 간접 통치의 형태를 취한 것은, 점령하에서의 정책 형성과 그 실시에서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물론 전후 개혁의 근본과 관련된 신 헌법의 입안 과정에서 GHQ 민정국의 개입을 초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자주적인 정책 수행의 여지가 극히 한정되는데 불과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초기 점령 개혁에 있어 일본 정부가 문제를 먼저 파악하여, 그 나름대로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일 한국인의 선거권의 「停止」를 담은 중의원 선거법의 개정도 거의 GHQ의 개입없이 이른 사례의 하나이다.

전시중 翼贊選舉에 의하여 形骸化한 의회 개혁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은 東內閣을 이어 받은 幣原內閣(1945년 10월 9일 성립)下이고 이미 그 시점에서는 10월 4일 「人權指令」에 나타나듯이 일본의 민주화나 확립을 둘러싼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의 주체가 된 內務省의 대응은 신속했다. 10월 23일 발빠르게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을 내리고 부인 참정권 등을 담은 「衆議院選舉制度改正要綱」이 각의 결정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재일한국인·대만인의 선거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었다.

재일한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 최초의 개정요강은,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면 천황제에 대한 공격이 강해진다는 정치적 혹은 치안적 관점에서 반대 의견에 직면한다. 그러나 內務省 으로서는 이것에 반쯤 동조하면서도 재일한국인이 강화조약 체결까지는 일본 국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런 이상 그 참정권을 빼앗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內務省의 딜레마를 해결할 지혜를 짜 낸 것이 정부내에서 법률 해석의 프로라고도 할 수 있는 법제국 관료들이었다. 최근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법제국은 구 식민지 출신자는 평화조약의 체결까지는 일본 국적을 갖지만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중간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선거권에 대해서도 법률상 외형적으로는 한국인·대만인도 갖지만, 그러나 그 「권리 행사는 평화조약에 의하여 한국인,대만인의 지위가 확정되기 까지 정지한다」고 하여 내무성을 설득한 것으로 추정된다[水野, 1996:30].

이리하여 최초의 「개정안」부터 거의 한달 후 11월 13일 다시 각의 결정된 「改正要綱案」에는 「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자」란, 식민지 시대에 같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內地戶籍」을 갖지 않았던 한국인·대만인을 가리키고 있다.

실제로는 법제국 자료에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잘게 써 넣은 글이 있고, 이 자료를 찾은 水野直樹는 그런 고려가 순 법률적인 관점에서 법안의 적합성을 심의해야만 할 법제국의 논리를 왜곡시켜 내무성도 결국은 이에 응한 것이 아닐까 추론하고 있다[水野, 1996:29~33].

구 식민지 출신자가 일본인과 외국인의 「중간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경우, 이 중간적 존재를 구별할 기준이 된 것이 「戶籍」이었다. 이 「호적 조항」은 그 후에도 점령하에서 국적상 일본인인 재일 한국인의 권리를 제한할 기준이 된다. 그와 동시에 재일 한국인의 국적 상실로 가는 중대한 일보를 밟게 되는 것이다.

2) 일본 국적의 상실

초기 점령 개혁의 집대성으로 제정된 신 헌법은, 보통 선거에 근거하여 국회를 통치하는 최상위에 두고 「일본 국민」의 통치가 객체에서 그 주체로의 전환, 즉 국적상 일본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전환을 결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통치의 주체임을 보장하는 핵심이야말로 참정권이고 재일 한국인은 일본 국민으로 취급되면서도 다시 이것을 잃게 된 것이다.

애초 상징 천황제의 규정 그것이 의식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재일 한국인을 異物로서 배어 내 버리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일본 국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미 서술한 「외국인 등록령」이 신 헌법의 시행(1947년 5월) 직전에 최후의 칙령으로서 제정된 일도 역시 상징적이다. 이 등록령은 소위 「간주 규정」을 통한 “일본 국민”인 재일한국인을, 강제 퇴거를 포함하는 외국인 관리하에 둔다. 말하자면 재일한국인의 「외국인」화의 제 2단계라고도 할 조치였다.

大沼保昭에 의하면, 당초 GHQ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회의 제정에 의하여만 한다고 하여 등록령의 칙령에 의한 제정에 난색을 나타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것에 동의했다고 일컬어진다[大沼, 1993:46]

점령 통치의 처음에는 재일 한국인 문제를 증시하지 않았던 GHQ는, 일본 정부가 새 선거법에 「戶籍條項」을 슬쩍 집어 넣는 것을 목인했다. 최소한 GHQ는 일본측의 「중간적 지위」라는 생각에 의한 차별 이론을 재일 한국인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수동적 입장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HQ는 신 헌법이 시행된 단계에서 재일 한국인을 둘러싼 일본측의 논리를, 그 통제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 재일 한국인은 GHQ에 있어서도 이미 국회를 통하여 그 의사가 확인된 통치 주체의 일원으로는 취급되지 않은 존재였던 것이다.

여하튼 재일 한국인은 이 단계에서 이미 천황제라는 일본의 전후 개혁의 부담스러운 측면을 가진 존재로서 신 헌법이 상정하는 「國民」밖에 놓여 있다고 해도 좋다.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에 이미 선택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재일 한국인의 국적을 빼앗는, 전술한 법무부 민사국장의 「通達」방향이 일본 정부의 복안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사전에 문의를 받는 것 처럼 1949년 12월에 당시 川村외무정무차관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재일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언급하고 「대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田中,1991:65]. 공개된 외무성 내부 문서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검토한 松本利彦에 의하면 이 국회 답변의 단계까지는 「일관되게[국적의]“선택권”이 상정」되고 「그 경우,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귀환, 또는 일본 정부의 송환권이 요망된다」고 한다[松本, 1988:140].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에 국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일본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식민지나 전쟁지의 재류 일본인, 특히 在朝 日本人 문제이고 일본 정부는 미국에 在韓 日本人의 선처를 요구하는 철저한 배제 논리를 관철하지는 않았다.

「국적 선택권 플러스 송환권」이라는 이 방향은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 이후 전환된다. 즉 일본 정부는 이때 쯤 在韓 日本人의 귀환이 거의 완료된 다음, 미국측의 평화조약 구상 가운데 국적 규정이 없는 것을 알고 재일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의 국적 규정에 관해서도 선거법 개정 때 「戶籍 條項」과 같이 미국측의 관여를 거의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를 관철한 것이다.

II. 마치면서

재일 한국인의 처우나 국적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가 취한 자세는 패전의 충격을 헤쳐 나간 일본인의 국민 의식에 의하여 지탱되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확실히 「불 탄 자리의 민주화」(점령 개혁)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대적인 가치 의식에 도움이 되고, 일본인의 의식을 크게 바꿨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인의 아시아관이나 한국인관은, 점령 하에서는 거의 따져 물어 고치는 법이 없이 잠재화하고, 말하자면 불순물이 없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蘇生이 이 시기의 많은 일본인의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한 민족 한 국가」라고 하는 감각은 「大東亞共榮圈」의 꿈을 저버린 경험을 가진 이 시기가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재일 한국인의 「外國人」화의 저류를 이룬 것도 패전 후 일본인을 붙잡은 불순물없는 「國民」으로의 지향이고 동서 냉전의 깊은 곳에 빠진 GHQ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국민 의식을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재일 한국인 정책을 묵인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시기의 일본인을 붙잡은 「한 민족 한 국가」로의 지향이, 한국인측에도 강렬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 1955년 「노선 전환」으로 알려진 재일 한국인 운동의 조직적 재편은, 그러한 「한 민족 한 국가」로의 지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된 것이다. 이 재편을 통하여 새로 탄생한 민족 조직은 그때까지 일본 사회로의 정치적 관여를 「내정 간섭」으로서 부정하고, 재일 한국인이 본국의 「해외 공민」이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하였다. 즉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의 정주자로서의 생활 실태를 무시하여 그들을 일률적으로 「외국인」으로 한 것에 대하여, 재일 한국인측도 스스로를 「외국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 「원격지 내쇼널리즘」(B 앤더슨)라 할 재일 한국인 자신의 관념과 실태의 괴리는 일본 정부가 「한 민족 한 국가」로의 지향을 배경으로 취한 조치와 함께, 전후 재일 한국인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여하튼 일본의 패배에서 1952년 「通達」을 거쳐 재일 한국인 운동의 「노선 전환」으로 이르는 전후 10년의 역정은 재일 한국인을 에워싼 모든 문제가 소위 「國民」의 논리로 치부

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그러한 「國民」의 논리 그자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시대의 문맥에 있어 다시 그 10년의 의미를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전후 반세기에 걸친 재일 한국인의 발자취 가운데, 만약 그 최초의 10년(1945~55년)이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의미로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10년(1980년대 중반~현대)은, 재일 한국인과 일본 사회의 쌍방을 붙잡고 있던 「國民」의 관념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라든가 냉전의 종식으로서 특징지워진 시대의 변화 가운데, 「國民」이란 무엇인가, 「國籍」이란 무엇인가는 문제가 우리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번역 : 이 창익, 제주대학교 일어 일문학과 교수)

일 러 두 기

- (1) 이 논문은 [『移動と定住』-日歐比較の國際勞動移動-, 佐藤誠/アントニ-Jファイルディング 編著, 同文館: 123~152, 1998]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 (2) 필자는 본문에서 역자가 '한국'으로 쓴 부분을 '조선'으로 표기하였지만, 역자는 고유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한국'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한국이라는 용어는 남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까지 포함한 것이다.
예) 재일조선인→재일한국인, 조선반도→한반도, 조선전쟁→한국전쟁
예외)재일조선인총연맹의 '조선'은 단체의 고유명이므로 그대로 둔다.